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 (양승조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0992 |
|----------|-------|

발의연월일 : 2017. 12. 22.

발 의 자 : 양승조 · 정춘숙 · 오세재
이학영 · 윤소하 · 김상희
김해영 · 권미혁 · 기동민
전혜숙 의원(10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지역사회 기반의 일차의료 체계가 부실하여 국민이 의원급 의료기관보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이용을 선호하고 있고, 이는 의료자원 배분의 불균형과 비효율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양질의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일차의료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지역사회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국민적 인식 부족과 국가적 지원 부족으로 일차의료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일차의료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차의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일차의료이 우리나라 의료체계 및 지역사회에 정착·확산 될 수 있도록 일차의료의 기능정립 및 일차의료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일차의료란 지역사회 중심의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 행하는 보건 의료로서 질병의 예방·치료·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차의료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의료 전달체계의 개선, 일차의료 표준모형을 개발 및 보급, 의원급 의료 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간의 진료 협력체계 활성화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함(안 제3조부터 제7조).
-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차의료 인력정책의 수립,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
- 마. 일차의료 전담조직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 일차의료 발전에 관한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차의료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의 확립 및 지역 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일차의료의 기능 정립 및 일차의료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차의료”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하 “의원급 의료기관”이라 한다)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자원을 모으고 조정하면서 질병의 예방·치료·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해 행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해당하는 의료서비스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 지역사회 주민에게 흔히 발생하는 경증의 질병 및 외상의 예방과 치료

나. 주요 감염성 질환의 예방과 치료

다. 만성적인 질병의 지속적 관리

라. 산전진찰, 출산, 산후 모자보건 관리

마. 노인 건강관리

바. 장애인 건강관리

사. 정신건강 관리

아. 구강보건사업

자. 건강 유지를 위한 생활습관의 향상과 건강에 관한 상담·교육 등 건강관리서비스의 제공

2.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차의료의 기능정립, 일차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일차의료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차의료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일차의료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민보건 향상과 양질의 일차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의료전달체계 개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중심의 일차의료 정립을 통하여 국민이 질병의 특성과 경중에 따라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보건의료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목표 및 방향

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개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일차의료 표준모형의 개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이 양질의 일차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의 내용, 형태, 제공 절차 등에 관한 표준모형을 개발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른 일차의료 표준모형에 따른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이 제1항의 표준모형에 따른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이에 대한 의료비 경감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병·의원 간 협력체계의 활성화)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간의 진료 협력체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질병의 경중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기관 간 보건의료서비스가 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종별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회송 및 진료 정보의 공유·활용 등에 관한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일차의료 인력 정책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차의료 인

력의 자질 향상 및 임상역량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의과·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 일차의료 인력의 수련 또는 보수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사회에 일차의료이 효율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원급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나 질병예방관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2. 예방적 의료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3.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4.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 등의 조사·연구·교육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일차의료 실태조사 및 정보보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일차의료에 대한 수요 및 이용 형태, 일차의료 인력·시설 및 물자 등 일차의료의 실태에 관한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일차의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에게 일차의료에 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차의료기관의 현황, 일차의료서비스의 내용 등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정보체계의 구축·운영·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일차의료 전달조직의 설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차의료의 기능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도모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이 일차医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전달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달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회에 대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차의료의 발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